

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5. 16.

발의자 : 권칠승 · 정세균 · 안호영  
고용진 · 윤관석 · 박선숙  
손혜원 · 박정 · 이학영  
신경민 · 김진표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과 폐업·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써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를 관리·운영하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자격, 공제금 지급을 위한 폐업여부 확인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·폐업사실 증명 등 4종의 서류를 가입자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가입자는 관련 증명을 별도로 발급받기 위해 절차적·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고,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하여야 하는 등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큰 상황임.

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

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,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18조의4 신설).

##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8조의4(과세정보 제공의 요청) ① 중앙회는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,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,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<u>제118조의4(과세정보 제공의 요</u></p> <p><u>청) ① 중앙회는 소기업·소상공</u></p> <p><u>인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가입</u></p> <p><u>자의 자격 확인, 공제금의 지급</u></p> <p><u>과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보조</u></p> <p><u>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</u></p> <p><u>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</u></p> <p><u>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</u></p> <p><u>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</u></p> <p><u>수 있다. 이 경우 과세정보 제</u></p> <p><u>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</u></p> <p><u>하여야 하고, 다른 목적을 위하</u></p> <p><u>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</u></p> <p><u>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</u></p> <p><u>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</u></p> <p><u>다.</u></p>